

■ 상속세 계산체계

구 분	내 용
전제조건	1.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한다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 ▶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추정상속재산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상속재산공제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1.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2.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기타 인적공제 1.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2. 미성년자공제: 500만원x20세까지의 연수 3.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4. 장애인공제: 500만원x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1.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2.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x) 세율	<table><tr><td>과세표준</td><td>세율</td><td>누진공제액</td></tr><tr><td>1억원 이하</td><td>10%</td><td>0</td></tr><tr><td>1~5억원 이하</td><td>20%</td><td>10,000,000</td></tr><tr><td>5~10억원 이하</td><td>30%</td><td>60,000,000</td></tr><tr><td>10~30억원 이하</td><td>40%</td><td>160,000,000</td></tr><tr><td>30억원 초과</td><td>50%</td><td>460,000,00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1~5억원 이하	20%	10,000,000	5~10억원 이하	30%	60,000,000	10~30억원 이하	40%	160,000,000	30억원 초과	50%	460,000,00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1~5억원 이하	20%	10,000,000																	
5~10억원 이하	30%	60,000,000																	
10~30억원 이하	40%	160,000,000																	
30억원 초과	50%	460,000,000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세대생략가산액	사망하지 않은 비속을 건너 뛰고 다음 단계의 비속에게 상속한 경우 산출세액x30% 가산																		
(=)산출세액 합계	=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2.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령에 의하여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되는 경우 (1년이내 재상속 100% ~ 10년이내 재상속 10%, 매년 10%씩 체감) 4.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산출세액 - 위 공제세액)x10%																		
(+)가산세 등	▶ 무[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																		
(=)차감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등																		
(-) 연부연납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신청, 담보제공, 5년 이내(6회 납부)																		
(-) 물납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50% 초과																		
(-) 분납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																		

이 상속세액 계산은 개략적인 계산이므로 정확한 세금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